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9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4.

발 의 자:김병주·안규백·홍성국

전용기 · 유정주 · 윤미향

이병훈 · 진성준 · 홍기원

김진표 · 김민기 · 김주영

이광재 • 박성준 • 홍영표

이용우・황 희・이규민

민홍철 • 윤건영 의원

(20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8월에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방부, 금융위원회, 은행연합회,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'장병내일준비적금'이 출시되었음.

제20대 국회에서 장병들이 이와 같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로 폐기되었음.

이에 '장병내일준비적금'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7

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7조의6(적금의 정부지원) ① 국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, 대체역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7조의6(적금의 정부지원) ①
	국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
	회복무요원, 대체역 및 제25조
	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
	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
	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
	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